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2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위원회('98.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정인화)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와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의 면허세를 면제한다. (안 제5조의 2)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안 제13조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과세 면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년 5월 27일과 11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 1998. 12.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와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의 면허세를 면제한다. (안 제5조의 2)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안 제13조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9조, 행정자치부 13400-273('98. 11. 12)호 지방세법 제9조, 행정자치부 13400-463('98. 5. 27)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없음
- 라.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 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 13조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전용면적 <u>60제곱미터 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략)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u>85제곱미터 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현행과 같음)